

경제 및 고용 동향

◆ 2015년 3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1.8% 증가, 전월대비로는 0.6% 감소

○ 2015년 3월 생산은 광공업, 건설업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1.8% 증가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16.6%), 기계장비(4.8%)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전자부품(-12.1%), 통신·방송장비(-31.9%), 자동차(-2.3%)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0.4% 감소함(전월대비 0.6%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전문·과학·기술(-1.9%), 숙박·음식점업(-1.2%)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9.7%), 보건·사회복지(6.9%), 부동산·임대(8.6%)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함(전월대비 0.4% 감소).

○ 2015년 3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2.8% 증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6.6%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2.1%)에서 감소하였으나 승용차,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2.8% 증가(전월대비 0.6% 감소)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6.6% 증가(전월대비 3.9%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 실적이 줄어 전년동월대비 1.4% 감소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주택, 기계설치 등에서 수주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41.7% 증가

- 2015년 3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하였고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1.2% 상승함.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하락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7p 상승함.

◆ 2015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0.4% 상승(생활물가지수 0.7% 감소)

- 2015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48(2010년=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1%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0.4% 상승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주류·담배(50.0%), 음식·숙박(2.4%), 교육(1.6%), 의류·신발(1.3%) 등에서 상승한 반면, 교통(-9.5%)과 주택·수도·전기·연료(-0.4%) 등에서는 하락함.
 - 2015년 2월 생활물가지수는 108.09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7% 감소함(전월대비로는 보합).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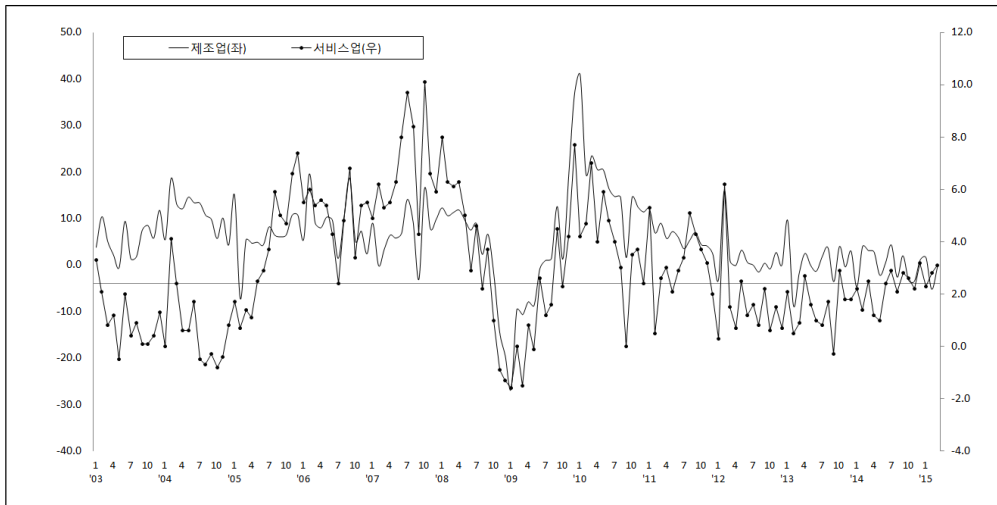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5 ^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3월	1/4 ^p	3월 ^p	
생산	광공업 생산	10.4	7.2	5.3	5.0	6.9	3.8	1.5	0.4	1.1	1.7	-1.7	-0.7	0.0	-2.0	0.0	3.0	-1.0	-0.1(-0.4)
	제조업 생산	10.6	7.4	5.1	5.3	7.0	4.2	1.5	0.3	1.2	1.8	-1.8	-0.8	0.0	-2.2	-0.1	3.1	-1.3	-0.4(-0.6)
	출하	11.9	7.2	4.9	3.5	6.7	3.3	1.5	0.4	-0.1	1.3	-2.3	-1.0	-0.2	-1.3	-0.2	2.7	-0.9	-0.5(-0.1)
	내수	6.8	3.8	2.7	0.2	3.3	0.3	-1.3	-1.5	-1.9	-1.1	-2.8	-1.2	-0.4	-2.6	0.2	4.2	-0.8	0.2(-1.2)
	수출	18.1	11.6	7.7	7.2	10.8	6.7	4.9	2.3	1.8	3.9	-1.7	-0.6	0.1	0.3	-0.6	1.0	-0.8	-1.2(-1.2)
	서비스업생산	2.8	3.3	4.5	2.7	3.3	2.5	1.7	1.6	1.3	1.7	0.8	1.7	0.7	2.7	2.2	2.5	2.8	3.1(-0.4)
소비	소비재 판매	5.4	5.7	4.7	1.9	4.3	2.0	1.0	1.7	2.5	1.8	0.2	1.1	0.7	1.9	1.6	1.9	1.7	2.8(-0.6)
투자	설비투자	5.4	4.8	-3.1	-4.7	0.7	9.4	-0.4	-7.1	-5.6	-1.1	-15.4	-10.0	-4.7	5.1	4.6	8.7	7.6	6.6(-3.9)
물가		3.0	2.4	1.6	1.7	2.2	1.6	1.2	1.4	1.1	1.3	1.1	1.6	1.4	1.0	1.3	1.5	0.6	0.4(0.1)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5년 4월 기준임.
 4)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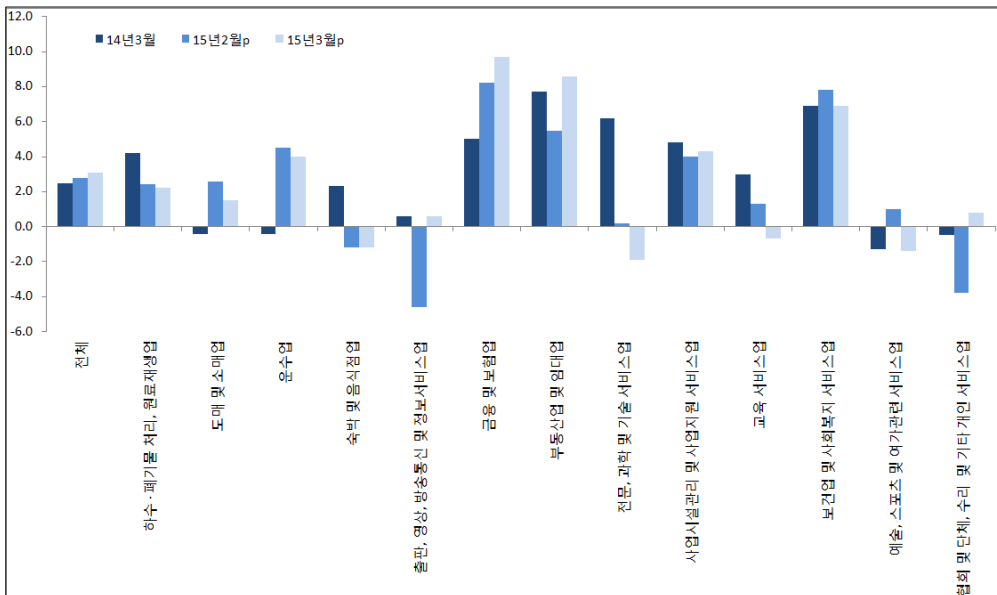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2015년 2월, 3월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5. 5), 『2015년 3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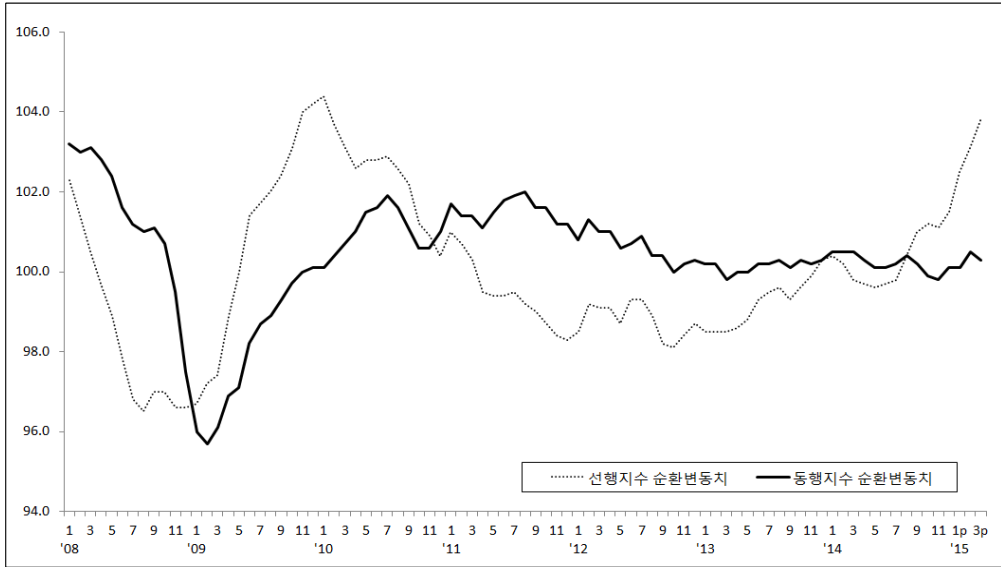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정현상, 동향분석팀 연구원)

◆ 취업자 216천 명 증가, 증가폭 크게 둔화

- 2015년 4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6,95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0천 명(0.9%)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592천 명으로 121천 명(0.8%) 증가하였고, 여성은 11,362천 명으로 119천 명(1.1%) 증가하였음.
- 2015년 4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성(74.2%)은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하였고, 여성(51.8%)은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음(그림 4 좌측 참조).
- 2015년 4월 중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함.
 - 남성의 고용률은 71.4%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9.8%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음(그림 4 우측 참조).
- 2015년 4월 중 취업자는 25,90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6천 명(0.8%)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99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2천 명(0.8%)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90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5천 명(0.9%) 증가하였음(그림 5 참조).

- 2015년 4월 중 실업자는 1,05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천 명(2.2%) 증가,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과 동일함.
 - － 남성 실업자는 59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 명(-0.2%) 감소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45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천 명(5.5%) 증가하였음.
 - － 실업률은 남성이 3.8%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고 여성은 4.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음.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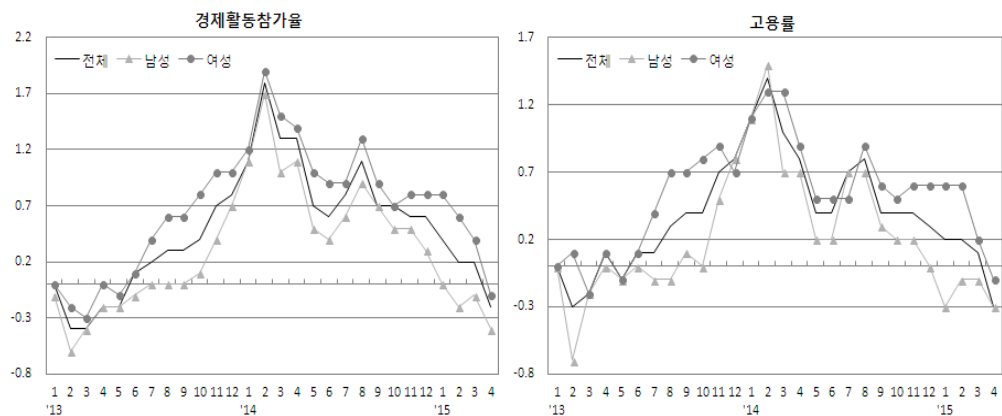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2014				2015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3월	2/4분기
경제활동인구	26,078 (2.2)	25,945 (3.4)	26,767 (2.4)	26,714 (3.0)	26,810 (2.4)	26,622 (2.1)	26,356 (1.6)	26,577 (1.5)	26,954 (0.9)
참 가 율	61.7	61.3	63.1	63.0	63.0	62.4	61.5	62.0	62.8
취 업 자	25,346 (2.2)	24,913 (3.0)	25,790 (1.8)	25,684 (2.3)	25,927 (2.0)	25,767 (1.7)	25,267 (1.4)	25,501 (1.3)	25,900 (0.8)
고 용 률	60.0	58.8	60.8	60.6	60.9	60.4	59.0	59.5	60.3
실 업 자	733	1,031	977	1,030	884	854	1,089	1,076	1,053
실 업 률	2.8	4.0	3.7	3.9	3.3	3.2	4.1	4.0	3.9
비경제활동인구	16,167 (-0.6)	16,397 (-2.6)	15,685 (-1.4)	15,700 (-2.3)	15,760 (-1.4)	16,066 (-0.6)	16,469 (0.4)	16,298 (0.7)	15,971 (1.7)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5. 5), 『2015년 4월 고용동향』.

〈그림 4〉 성별 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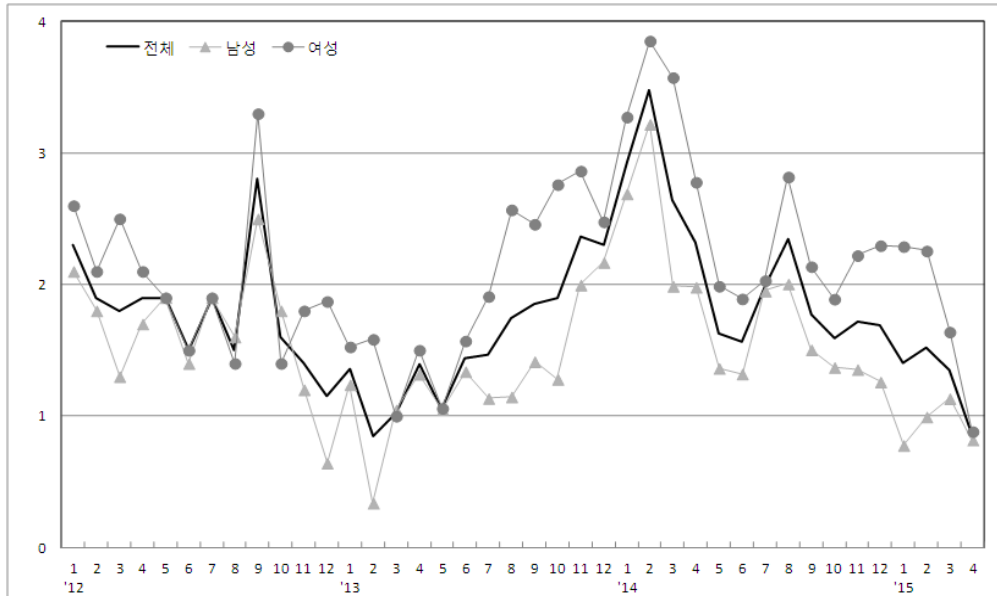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5년 4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97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1천 명(1.7%)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41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6천 명(2.8%)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55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6천 명(1.2%) 증가하였음.
 - 활동상대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49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4천 명(16.7%) 증가하였고,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122천 명으로 196천 명(-4.5%) 감소하였음.
 - 2015년 4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39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천 명 증가하였음.

◆ **농림어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제외 산업에서 취업자 증가**

- 2015년 4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167천 명, 3.9%), 건설업(63천 명, 3.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69천 명, 1.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67천 명, 0.7%)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35천 명, -8.6%), 전기·운수·통신·금융업(-13천 명, -0.4%)에서는 감소함.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2014				2015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3월			3월	4월	
전 산업	25,346 (2.2)	24,913 (3.0)	25,790 (1.8)	25,684 (2.3)	25,927 (2.0)	25,767 (1.7)	25,267 (1.4)	25,501 (1.3)	25,900 (0.8)	
농림어업	1,504 (-1.0)	1,179 (1.0)	1,631 (-3.2)	1,563 (-1.8)	1,603 (-7.0)	1,395 (-7.2)	1,092 (-7.3)	1,257 (-5.3)	1,428 (-8.6)	
제조업	4,245 (1.2)	4,279 (3.0)	4,319 (3.3)	4,288 (2.3)	4,346 (4.7)	4,374 (3.0)	4,418 (3.2)	4,400 (2.7)	4,455 (3.9)	
건설업	1,783 (-0.5)	1,683 (1.6)	1,813 (0.6)	1,775 (-0.2)	1,833 (3.2)	1,854 (4.0)	1,756 (4.3)	1,777 (4.6)	1,838 (3.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751 (2.6)	5,837 (5.5)	5,798 (3.8)	5,818 (5.5)	5,930 (4.9)	5,992 (4.2)	5,984 (2.5)	5,924 (2.3)	5,887 (1.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8,994 (3.6)	8,865 (2.4)	9,147 (1.9)	9,149 (2.4)	9,176 (2.1)	9,128 (1.5)	8,978 (1.3)	9,100 (1.0)	9,216 (0.7)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3,054 (1.9)	3,055 (1.9)	3,067 (-0.5)	3,077 (0.1)	3,026 (-2.5)	3,015 (-1.3)	3,029 (-0.9)	3,030 (-0.3)	3,064 (-0.4)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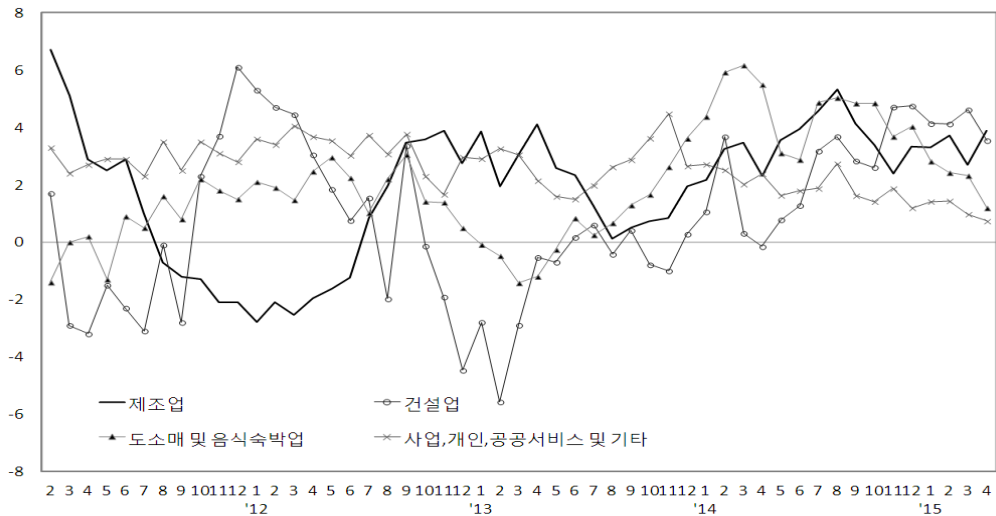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2015. 5), 『2015년 4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

- 2015년 4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19,08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8천 명(1.9%) 증가, 비임금근로자는 6,81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2천 명(-1.9%) 감소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2,448천 명으로 300천 명(2.5%) 증가하였고 일용근로자는 1,617천 명으로 78천 명(5.1%)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5,016천 명으로 31천 명(-0.6%) 감소하였음.
- 2015년 4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72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0천 명(8.8%) 증가,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883천 명으로 61천 명(-0.3%) 감소함.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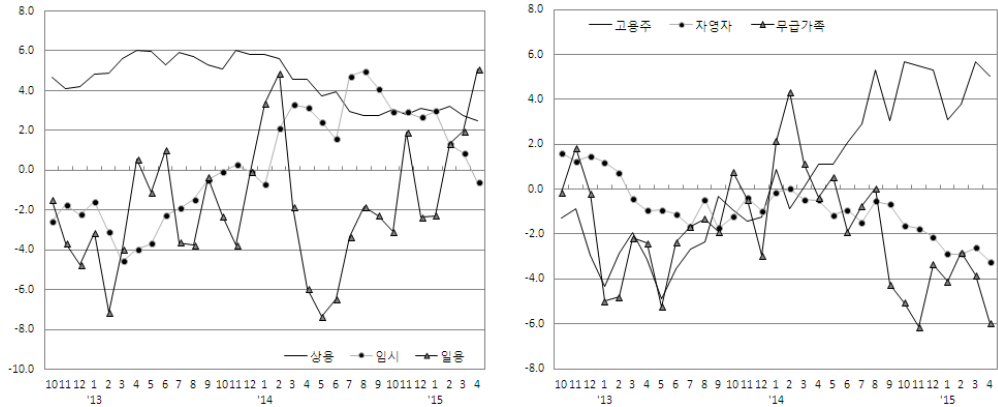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2014				2015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3월	
전 체	25,346 (2.2)	24,913 (3.0)	25,790 (1.8)	25,684 (2.3)	25,927 (2.0)	25,767 (1.7)	25,267 (1.4)	25,501 (1.3)	25,900 (0.8)
비임금근로자	6,854 (-0.9)	6,597 (0.3)	6,984 (-0.3)	6,951 (-0.1)	7,047 (0.0)	6,799 (-0.8)	6,509 (-1.3)	6,702 (-0.9)	6,819 (-1.9)
자영업주	5,618 (-0.9)	5,512 (-0.1)	5,712 (-0.2)	5,713 (-0.1)	5,760 (0.3)	5,625 (0.1)	5,463 (-0.9)	5,593 (-0.3)	5,656 (-1.0)
무급가족종사자	1,236 (-0.8)	1,085 (2.5)	1,272 (-0.6)	1,238 (-0.4)	1,287 (-1.7)	1,175 (-4.9)	1,046 (-3.6)	1,109 (-3.8)	1,164 (-6.0)
임금근로자	18,492 (3.4)	18,316 (4.0)	18,806 (2.6)	18,734 (3.2)	18,880 (2.8)	18,968 (2.6)	18,758 (2.4)	18,799 (2.2)	19,081 (1.9)
상용근로자	11,925 (5.6)	11,985 (5.3)	12,175 (4.1)	12,148 (4.6)	12,181 (2.8)	12,280 (3.0)	12,341 (3.0)	12,364 (2.7)	12,448 (2.5)
임시근로자	4,935 (0.0)	4,835 (1.5)	5,063 (2.4)	5,047 (3.2)	5,153 (4.6)	5,076 (2.9)	4,918 (1.7)	4,968 (0.9)	5,016 (-0.6)
일용근로자	1,631 (-2.1)	1,496 (2.1)	1,567 (-6.6)	1,539 (-6.0)	1,546 (-2.5)	1,612 (-1.2)	1,500 (0.3)	1,466 (1.9)	1,617 (5.1)
36시간 미만	3,395 (5.5)	3,593 (-35.4)	3,397 (-29.5)	3,422 (2.6)	5,229 (2.9)	3,659 (7.8)	3,689 (2.7)	3,617 (2.0)	3,722 (8.8)
36시간 이상	21,636 (1.7)	20,829 (15.1)	22,090 (9.3)	21,944 (2.2)	20,184 (1.9)	21,779 (0.7)	21,091 (1.3)	21,577 (1.4)	21,883 (-0.3)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5. 5), 『2015년 4월 고용동향』.

〔그림 7〕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통계청, KOSIS.

◆ 15~29세, 50대 이상에서 실업률 상승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2014				2015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월	4월
전 체	733 (2.8)	1,031 (4.0)	977 (3.7)	1,030 (3.9)	844 (3.3)	854 (3.2)	1,089 (4.1)	1,076 (4.0)	1,053 (3.9)
15~29세	328 (7.9)	419 (9.8)	399 (9.4)	426 (10.0)	371 (8.6)	350 (8.3)	445 (10.3)	455 (10.7)	445 (10.2)
30~39세	155 (2.6)	187 (3.2)	202 (3.4)	214 (3.6)	181 (3.0)	164 (2.8)	184 (3.1)	194 (3.3)	209 (3.6)
40~49세	114 (1.7)	155 (2.3)	167 (2.4)	179 (2.6)	145 (2.1)	146 (2.1)	164 (2.4)	175 (2.6)	163 (2.4)
50~59세	88 (1.5)	130 (2.2)	140 (2.3)	137 (2.3)	129 (2.1)	136 (2.2)	157 (2.6)	149 (2.5)	152 (2.5)
60세 이상	48 (1.4)	140 (4.4)	69 (1.9)	75 (2.0)	58 (1.5)	58 (1.6)	139 (4.1)	103 (2.8)	85 (2.3)
중졸 이하	84 (1.8)	173 (3.9)	108 (2.3)	112 (2.4)	95 (2.0)	96 (2.1)	164 (3.9)	131 (3.0)	97 (2.1)
고졸	335 (3.3)	443 (4.3)	427 (4.1)	439 (4.2)	414 (3.9)	381 (3.6)	472 (4.5)	444 (4.2)	438 (4.1)
대졸 이상	313 (2.8)	416 (3.7)	442 (3.8)	479 (4.2)	375 (3.3)	377 (3.3)	453 (3.9)	501 (4.3)	518 (4.4)
취업무경험 실업자	49	83	61	66	56	54	90	89	106
취업유경험 실업자	684	948	916	964	827	800	999	987	947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5. 5), 『2015년 4월 고용동향』.

- 2015년 4월 중 연령별 실업률은 15~29세(10.2%, 0.2%p), 50대(2.5%, 0.2%p), 60세 이상(2.3%, 0.3%p) 연령대에서 전년동월대비 상승, 30대(3.6%, 0.0%p)에서는 전년동월과 동일, 40대(2.4%, -0.2%p)에서는 하락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대졸 이상(4.4%, 0.2%p)에서 상승하였고, 중졸 이하(2.1%, -0.3%p), 고졸(4.1%, -0.1%p)에서 하락함.
- 2015년 4월 중 전체 실업자 1,053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10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천 명 증가,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947천 명으로 17천 명 감소함.

(조문경, 동향분석팀 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5년 2월 명목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6.4% 상승

- 2015년 2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47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4% 상승함.
 - 2015년 2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3,741천 원)은 초과급여(11.7%)와 특별급여(109.7%)의 상승으로 전년동월대비 16.8% 상승함. 특별급여의 큰 상승폭은 설날로 인한 명절효과(상여금 지급 월이 다름)에 기인함.
 - 상용근로자의 기본급 등이 포함된 정액급여 증가율은 2014년 3% 초반에 정체되어 있었으나 2015년 2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2.7% 상승에 그침.
 -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1,376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1.7% 하락함.
- 2015년 1~2월 평균 명목임금상승률(2.6%)은 전년동평균 대비 상승률 둔화
 - 2015년 1~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48천 원으로 전년동평균 대비 2.6%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2.4% 상승한 3,635천 원이며,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0.7% 하락한 1,422천 원임.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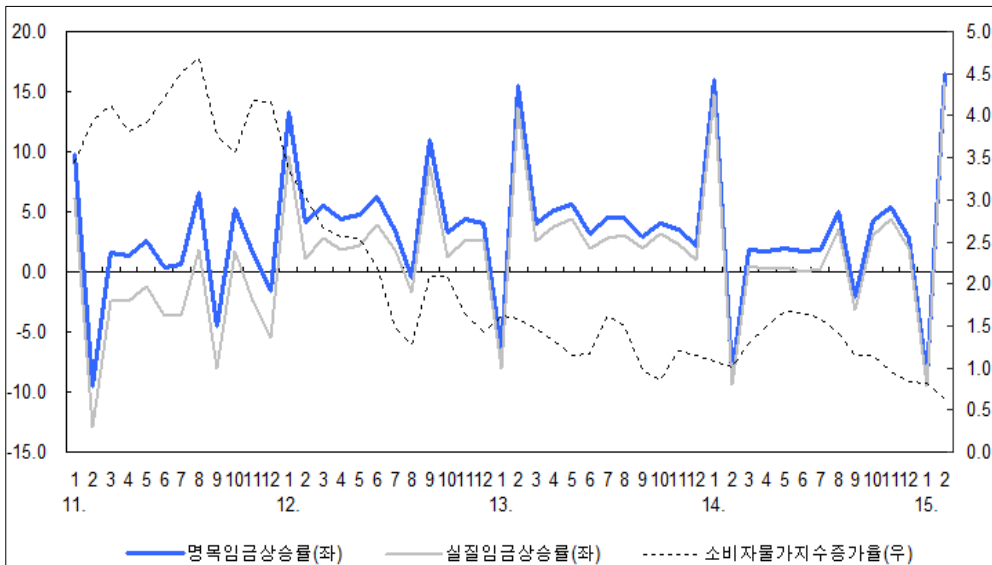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 2010=100.0)

	2012	2013	2014	2015				
				1~2월		1~2월		
				평균	2월	평균	2월	
전체 근로자	2,995	3,111	3,190	3,360	3,047	3,448	3,547	
임금총액	(5.3)	(3.9)	(2.5)	(3.4)	(-8.5)	(2.6)	(16.4)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178	3,299	3,378	3,548	3,203	3,635	3,741
		(5.3)	(3.8)	(2.4)	(3.3)	(-9.1)	(2.4)	(16.8)
	정액급여	2,470	2,578	2,660	2,637	2,617	2,720	2,687
		(5.5)	(4.4)	(3.2)	(3.3)	(3.2)	(3.1)	(2.7)
초과급여	181	184	201	183	180	201	201	
	(1.0)	(1.7)	(9.3)	(5.8)	(6.6)	(10.3)	(11.7)	
특별급여	527	537	516	728	407	713	853	
	(5.8)	(1.8)	(-3.7)	(2.7)	(-50.3)	(-2.0)	(109.7)	
임시·일용근로자 임 금총액	1,293	1,377	1,387	1,433	1,400	1,422	1,376	
	(6.4)	(6.5)	(0.7)	(3.1)	(5.3)	(-0.7)	(-1.7)	
소비자물가지수	106.3	107.8	109.0	108.8	108.8	109.5	109.5	
	(2.2)	(1.2)	(1.3)	(1.0)	(1.0)	(0.7)	(0.6)	
실질임금증가율	3.1	2.5	1.3	2.3	-9.4	1.9	15.7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0=10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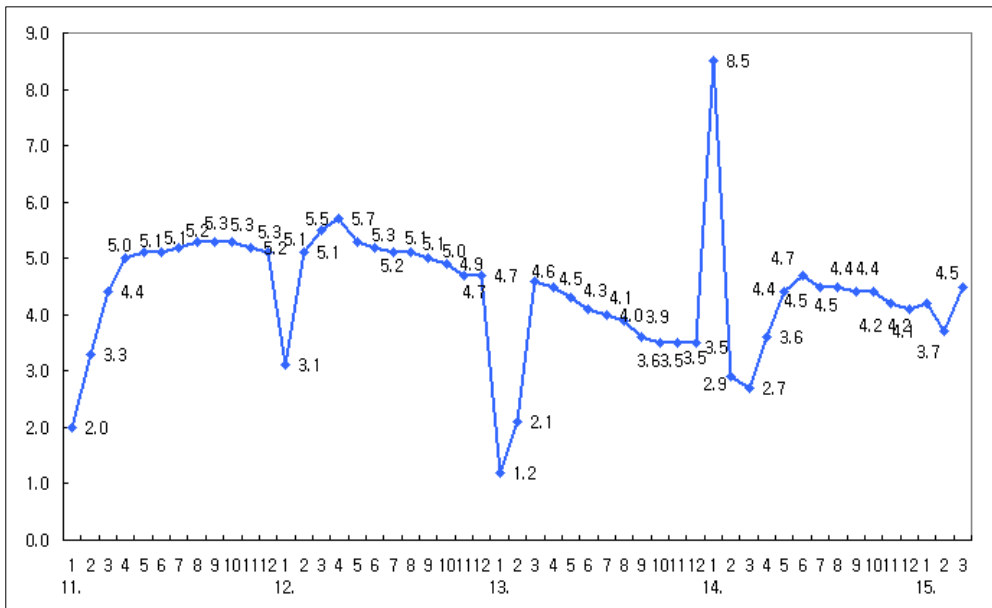
- 2015년 2월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5.7% 상승함.
 - 2015년 2월 소비자물가상승률(2010=100.0)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15.7% 하락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한 반면 명목임금의 상승폭이 확대되어 실질임금상승률이 크게 하락함.
 - 2015년 1~2월 평균 실질임금상승률은 전년동평균 대비 1.9% 상승함. 이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동평균 대비 하락한 반면 명목임금 상승폭이 0.8%p 둔화된 데 기인함.

◆ 2015년 3월 협약임금 인상률 4.5%

- 2015년 3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5%로 2014년 3월 인상률(2.7%)보다 1.8%p 상승함.
 - 2015년 3월 임금결정 진도율은 1.7%로 전년동월 대비 0.2%p 낮은 수준임.

[그림 9]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5년 2월 모든 산업에서 임금 증가

- 2015년 2월 임금상승폭이 가장 큰 산업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나타남.
 - 2015년 2월 임금상승폭이 큰 산업은 교육서비스업(21.9%), 제조업(21.8%), 광업(20.4%), 금융 및 보험업(18.8%) 순으로 나타남.
- 2015년 1~2월 평균 임금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5%)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함.
 - 2015년 1~2월 평균 임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7.5%)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7.1%), 운수업(6.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3%), 교육서비스업(4.9%) 순으로 임금상승이 두드러짐.
 - 특히 전년동평균 대비 임금상승률 둔화가 컸던 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부문으로 나타남.

〈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3	2014	2015			
			1~2월		1~2월	
			평균	2월	평균	2월
전 산업	3,111 (3.9)	3,190 (2.5)	3,360 (3.4)	3,047 (-8.5)	3,448 (2.6)	3,547 (16.4)
광업	3,557 (2.5)	3,480 (-2.1)	3,515 (-4.8)	3,080 (-12.8)	3,602 (2.5)	3,707 (20.4)
제조업	3,371 (4.7)	3,506 (4.0)	3,908 (6.0)	3,227 (-12.5)	3,947 (1.0)	3,931 (21.8)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542 (2.9)	5,554 (0.2)	5,014 (6.2)	5,000 (-0.1)	5,112 (2.0)	5,347 (6.9)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743 (3.3)	2,812 (2.5)	2,839 (3.9)	2,639 (-4.0)	2,927 (3.1)	2,981 (13.0)
건설업	2,414 (6.2)	2,497 (3.4)	2,584 (2.7)	2,450 (-4.0)	2,681 (3.7)	2,793 (14.0)
도매 및 소매업	3,168 (1.5)	3,206 (1.2)	3,223 (-0.1)	3,112 (-6.1)	3,359 (4.2)	3,557 (14.3)
운수업	2,732 (5.5)	2,805 (2.7)	2,731 (-0.5)	2,699 (-9.2)	2,902 (6.3)	3,136 (16.2)
숙박 및 음식점업	1,772 (1.9)	1,785 (0.7)	1,795 (2.1)	1,762 (-0.7)	1,821 (1.4)	1,870 (6.2)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936 (2.2)	3,905 (-0.8)	3,958 (-2.2)	3,776 (-14.5)	4,090 (3.4)	4,333 (14.7)
금융 및 보험업	5,058 (1.4)	5,234 (3.5)	5,503 (-0.5)	5,237 (-10.8)	5,914 (7.5)	6,223 (18.8)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69 (3.4)	2,323 (2.3)	2,337 (4.1)	2,292 (1.3)	2,501 (7.1)	2,604 (13.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243 (3.2)	4,419 (4.2)	4,432 (6.8)	4,156 (-5.7)	4,320 (-2.5)	4,510 (8.5)
사업서비스업	1,883 (5.2)	1,924 (2.2)	1,927 (4.2)	1,883 (1.0)	1,988 (3.2)	2,035 (8.1)
교육서비스업	3,261 (4.4)	3,375 (3.5)	3,784 (2.5)	3,341 (-8.5)	3,968 (4.9)	4,072 (21.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62 (2.0)	2,700 (1.4)	2,672 (-1.4)	2,544 (-6.7)	2,815 (5.3)	2,923 (14.9)
여가관련 서비스업	2,326 (5.2)	2,398 (3.1)	2,427 (2.1)	2,275 (-3.3)	2,459 (1.3)	2,574 (13.1)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226 (-0.1)	2,249 (1.0)	2,247 (-3.0)	2,197 (-8.5)	2,284 (1.7)	2,392 (8.9)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2월 중소기업 · 대규모 사업체 모두에서 상용근로자 임금 증가

- 2015년 2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중소 · 대규모 사업체에서 모두 증가하였고, 대규모 사업체에서의 임금 증가폭이 더 큼.
 - 2015년 2월 기준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3,29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4.9% 상승함. 이는 명절효과로 인한 특별급여의 상승폭이 컸던 데 기인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임금총액(5,573천 원)은 명절효과로 인한 특별급여 증가율(95.0%)뿐만 아니라 정액급여 증가율도 5.5% 상승한 데 기인함.
- 2015년 2월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중소기업에서는 감소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증가함.
 - 중소기업의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2.5% 하락한 1,355천원임.
 - 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8.6% 상승한 1,661천 원임.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 비상용근로자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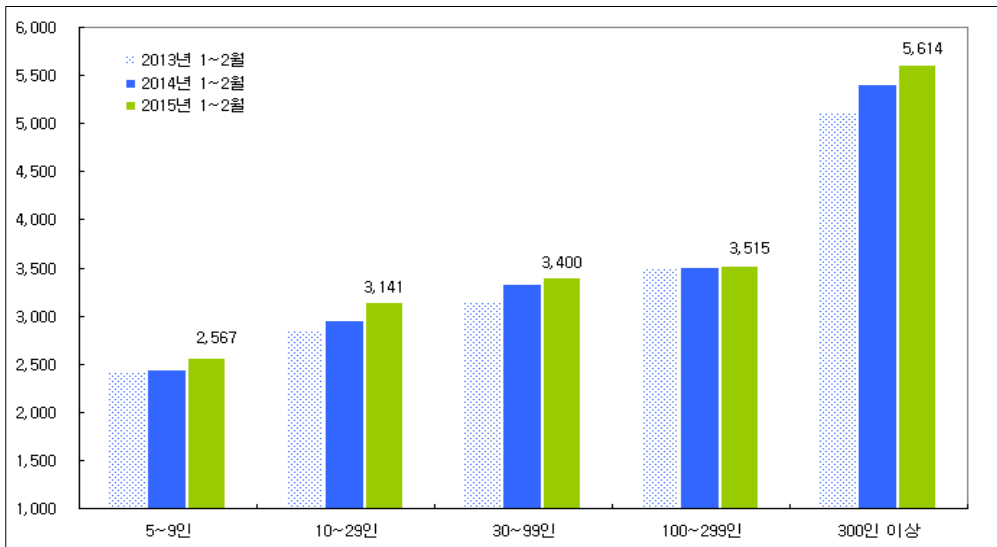
		2013	2014	2015			
				1~2월 평균	2월	1~2월 평균	2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299(3.8)	3,378(2.4)	3,548(3.3)	3,203(-9.1)	3,635(2.4)	3,741(16.8)
	정액급여	2,578(4.4)	2,660(3.2)	2,637(3.3)	2,617(3.2)	2,720(3.1)	2,687(2.7)
	초과급여	184(1.7)	201(9.3)	183(5.8)	180(6.6)	201(10.3)	201(11.7)
	특별급여	537(1.8)	516(-3.7)	728(2.7)	407(-50.3)	713(-2.0)	853(109.7)
	비상용임금총액	1,377(6.5)	1,387(0.7)	1,433(3.1)	1,400(5.3)	1,422(-0.7)	1,376(-1.7)
5~299인	상용임금총액	2,938(3.7)	3,008(2.4)	3,038(2.5)	2,872(-6.0)	3,158(4.0)	3,299(14.9)
	정액급여	2,433(4.3)	2,504(2.9)	2,485(3.3)	2,470(3.2)	2,560(3.0)	2,533(2.6)
	초과급여	160(3.0)	172(7.5)	155(6.7)	152(6.9)	170(9.2)	168(10.3)
	특별급여	345(-0.3)	332(-3.6)	397(-3.2)	250(-51.8)	428(7.7)	598(139.6)
	비상용임금총액	1,392(7.0)	1,390(-0.1)	1,428(1.6)	1,390(3.7)	1,409(-1.3)	1,355(-2.5)
300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4,583(3.6)	4,827(5.3)	5,404(5.7)	4,412(-15.2)	5,614(3.9)	5,573(26.3)
	정액급여	3,093(4.3)	3,272(5.8)	3,190(3.9)	3,153(3.5)	3,381(6.0)	3,326(5.5)
	초과급여	270(-1.6)	316(16.9)	282(4.7)	280(6.6)	333(18.2)	337(20.3)
	특별급여	1,220(3.0)	1,239(1.5)	1,932(8.9)	979(-48.4)	1,899(-1.7)	1,910(95.0)
	비상용임금총액	1,219(0.8)	1,354(11.1)	1,499(22.7)	1,529(26.1)	1,602(6.9)	1,661(8.6)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1~2월 평균 상용근로자 임금은 중소기업에서 모두 상승했으나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전년동평균 대비 상승률 둔화
 - 중소기업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은 전년동평균 대비 1.5%p 상승한 3,158천 원인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은 전년동평균 대비 1.8%p 하락한 5,614천 원임.
 - 중소기업 사업체 비상용근로자의 1~2월 평균 임금은 전년동평균 대비 1.3% 하락한 1,409천 원인 반면, 대규모 사업체 비상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6.9% 상승한 1,602천 원임.

[그림 10]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1~2월 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2월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감소(20일 → 17일)로 전년동월대비 11.4% 감소

- 2015년 2월 근로시간(147.8시간)은 근로일수 감소로 전년동월 대비 11.4% 감소함.
 - 2015년 2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147.8시간)은 전년동월(166.8시간)에 비해 19.0시간 감소함(표 9 참조).
 -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151.4시간)과 소정 실근로시간(139.5시간)은 전년동월 대비 각각 11.6%, 12.4% 감소하였고,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도 전년동월 대비 11.6% 감소한 106.5시간으로 나타남.

〈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

	2013	2014	2015			
			1~2월 평균		1~2월 평균	
			1~2월 평균	2월	1~2월 평균	2월
전체근로시간	172.6(-1.0)	171.4(-0.7)	167.9(-2.0)	166.8(4.3)	161.4(-3.9)	147.8(-11.4)
상용총근로시간	178.1(-1.0)	177.1(-0.6)	172.3(-1.7)	171.2(4.6)	165.7(-3.8)	151.4(-11.6)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5.6(-1.0)	164.1(-0.9)	160.0(-2.2)	159.3(4.5)	153.4(-4.1)	139.5(-12.4)
상용초과근로시간	12.5(-2.3)	12.9(3.2)	12.3(5.1)	11.9(6.3)	12.3(0.0)	11.9(0.0)
비상용근로시간	122.5(0.2)	117(-4.5)	123.0(-6.2)	120.5(-1.4)	115.0(-6.5)	106.5(-11.6)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1~2월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 대비 3.9% 감소함.
 - 2015년 1~2월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 대비 3.9% 감소한 161.4시간임(표 9 참조).
 - 상용근로자의 1~2월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 대비 3.8% 감소한 165.7시간, 비상용근로자는 전년동평균 대비 6.5% 감소한 115.0시간으로 나타남.

◆ 2015년 2월 근로시간은 근로일수의 감소로 모든 산업에서 감소

- 2015년 2월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5.3%)이며, 다음으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3.9%), 금융 및 보험업(-13.8%),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13.7%) 순으로 나타남.
- 2015년 1~2월 평균 근로시간의 감소폭이 컸던 산업은 건설업(-6.7%), 교육서비스업(-6.4%),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5.8%) 등으로 나타남.

〈표 1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3	2014	2015			
			1~2월 평균		1~2월 평균	
			1~2월 평균	2월	1~2월 평균	2월
전 산업	172.6(-1.0)	171.4(-0.7)	167.9(-2.0)	166.8(4.3)	161.4(-3.9)	147.8(-11.4)
광업	180.6(-2.5)	179.4(-0.7)	171.6(-4.6)	170.6(2.3)	168.2(-2.0)	153.1(-10.3)
제조업	185.0(-0.8)	185.4(0.2)	180.8(-0.7)	179.6(6.0)	174.0(-3.8)	159.4(-11.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3.4(-1.2)	170.5(-1.7)	169.4(-2.6)	168.3(-1.6)	165.9(-2.1)	156.7(-6.9)

〈표 10〉의 계속

	2013	2014	2015			
			1~2월 평균		2월	
			1~2월 평균	2월	1~2월 평균	2월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82.0(-1.5)	177.8(-2.3)	174.9(-2.2)	172.7(3.5)	164.8(-5.8)	150.1(-13.1)
건설업	152.7(0.1)	148.5(-2.8)	149.2(-5.6)	148.4(0.6)	139.2(-6.7)	128.2(-13.6)
도매 및 소매업	173.4(-0.6)	172.3(-0.6)	167.6(-2.4)	166.3(3.7)	161.4(-3.7)	147.1(-11.5)
운수업	177.8(-2.1)	173.1(-2.6)	169.3(-2.8)	167.0(1.0)	164.7(-2.7)	153.6(-8.0)
숙박 및 음식점업	177.3(-5.0)	175.2(-1.2)	174.5(0.5)	171.1(5.4)	167.5(-4.0)	154.3(-9.8)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3.0(-0.5)	161.9(-0.7)	159.2(-1.3)	159.5(6.7)	152.0(-4.5)	137.6(-13.7)
금융 및 보험업	162.7(-0.4)	163.4(0.4)	160.7(-1.2)	160.6(6.4)	152.8(-4.9)	138.4(-13.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1.5(-1.0)	190.1(-0.7)	186.7(-1.7)	183.0(2.5)	181.3(-2.9)	167.8(-8.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3.9(-0.8)	163.3(-0.4)	159.1(-1.0)	159.9(7.5)	151.8(-4.6)	137.6(-13.9)
사업서비스업	172.3(-0.5)	171.9(-0.2)	167.2(-1.6)	166.0(4.6)	163.1(-2.5)	149.4(-10.0)
교육서비스업	150.6(-0.3)	152(0.9)	151.3(-0.9)	151.8(6.0)	141.6(-6.4)	128.5(-15.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2.0(-1.6)	169.6(-1.4)	164.7(-3.2)	163.3(2.3)	159.5(-3.2)	145.8(-10.7)
여가관련서비스업	158.0(-0.1)	158.9(0.6)	155.5(1.6)	153.3(7.4)	148.7(-4.4)	138.1(-9.9)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7.5(-0.8)	162.9(-2.7)	160.7(-3.4)	159.4(2.8)	152.4(-5.2)	138.1(-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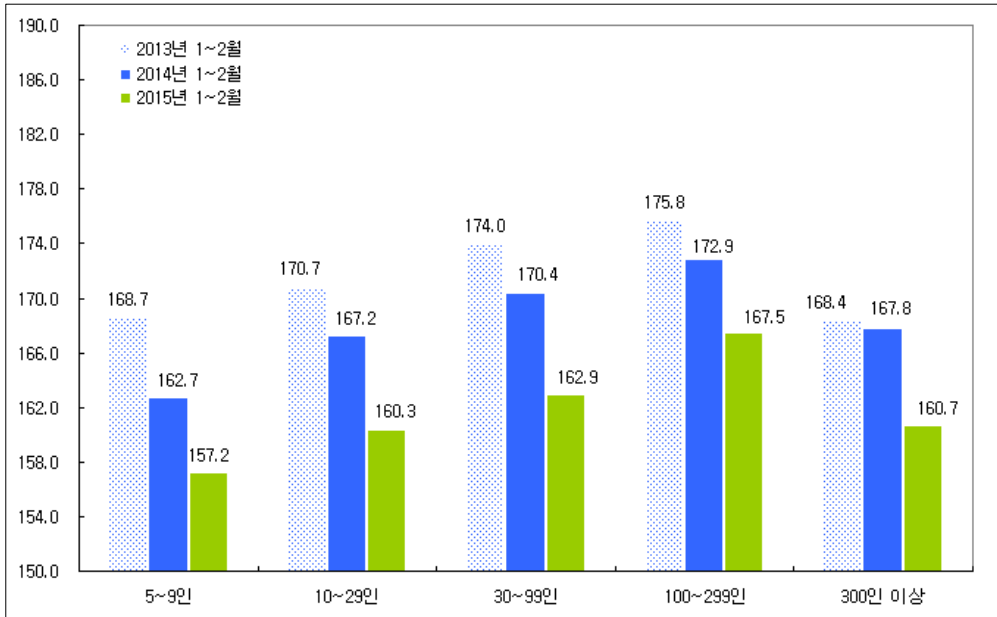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2월 근로시간은 근로일수 감소로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감소

- 2015년 2월 평균 근로시간은 중소기업에서 감소폭이 더 큼.
 - 5~299인 중소기업에서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1.5% 감소한 148.4시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전년동월 대비 11.2% 감소한 147.6시간을 기록함.
 - 세부 규모별로 보면,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42.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2.0%,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46.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1.6%,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49.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1.9%,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54.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0.3% 감소함.
- 2015년 1~2월 평균 근로시간은 대규모 사업체에서 감소폭이 더 큼.
 - 5~299인 중소기업에서 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161.6시간으로 전년동평균 대비 3.8% 감소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은 160.7시간으로 전년동평균 대비 4.2% 감소함.

[그림 11] 전체 근로자의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 추이

(단위 : 시간)



주 :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4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216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4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260건)보다 44건 낮은 수치임.
- 지난 4월 조정성립률 59.5%
 - 지난 4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56.9%에 비해 2.6% 높아진 수치임.
 - 조정사건 접수건수의 감소와 조정성립률의 상승을 통해 노사관계 불안정 요인들의 감소를 유추할 수 있음.

〈표 11〉 2014년, 2015년 4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5. 4	216	183	88	41	47	60	7	53	8	27	33	59.5
2014. 4	260	214	95	42	53	72	8	64	22	25	46	56.9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지난 4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282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4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143건)보다 139건 높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35.5%(81건), 기각·각하·취하비율이 64.5%(147건)를 차지함.

〈표 12〉 2014년, 2015년 4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5. 4	282	228	81	0	21	97	29	0	54
2014. 4	143	121	35	2	40	10	34	0	22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양대 노총,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대정부 투쟁 공조**

- 한국노총은 세계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12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함.
 - 이날 대회에서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청년층에게는 질 낮은 일자리, 중년층에게는 일상적 해고 공포, 장년층에게는 냉혹한 퇴출을 강요하고 있다”며 “오늘 노동자대회를 계기로 5월 임금·단체협상 시기집중 투쟁에 나선 뒤 일괄 쟁의조정 신청을 통해 총파업을 조직하겠다”고 밝힘.
 - 한국노총은 △일반 해고·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저지 △통상임금 범위확대 법제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쟁취 △임금체제 개편 반대 △비정규직 차별철폐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투쟁 목표로 제시함.
 -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무대에 오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연대투쟁을 강조하고, “양대 노총이 손을 맞잡고 싸운다면 이미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과 마찬가지”

라며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에 맞서 한국노총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말함.

- 민주노총은 125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고, 서울 집중집회로 열린 이날 대회에 전국 2천900여 개 사업장에서 5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함.
 -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자대회의 정식 명칭을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 세월호 진상규명! 2015 세계노동절대회’로 정했음.
 - 민주노총 관계자는 “권력과 자본의 탐욕과 횡포로부터 노동자·민중의 목숨과 권리를 지켜 내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힘.
 - 양대 노총은 이날 공동결의를 통해 “정부가 각종 지침과 매뉴얼, 가이드라인, 개악 입법 추진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양대 노총은 총파업 투쟁으로 이를 저지할 것이며 그로 인한 혼란과 파국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경고함.

◆ **한국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 한국노총은 7월 초 총파업 돌입을 위해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전 사업장에서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벌이고, 산별연맹·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6월 12일까지 찬반투표 준비를 위한 조직별 단위노조 대표자회의를 개최함.
 - 한국노총은 지난 18일 한국노총회관에서 26개 산별연맹·노조 위원장과 16개 지역본부 의장이 참석하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7월 초 총파업을 전제로 5~6월 투쟁계획을 계획함.
 - 한국노총은 이날 중집회의에서 “정부는 6월 중 취업규칙·일반해고 기준·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 중에 시행할 방침”이라며 “정부의 일방 추진을 막아 내기 위해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고 밝힘.
 - 투표안건은 ‘쉬운 해고, 임금삭감, 노동조건 개악 저지와 임금·단체협상 투쟁 승리를 위한 총파업에 관한 건’으로 정하였고,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저지 △임금체계 개편 저지 △단위사업장별 주요 현안을 투표 안건에 포함하도록 함.
 - 한국노총 관계자는 “총파업 찬반투표는 교섭진행 혹은 타결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안건을 놓고 전 조직에서 예외 없이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일정대로 투쟁을 진행하기 위해 총연맹과 산별·지역본부를 투쟁체제로 전환하고 파업 성사를 독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함.

◆ 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반대’

- 국회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함.
 - 여야와 일부 공무원단체로 이뤄진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도출해낸 합의안은 기여율을 7%에서 9%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지급률은 1.9%에서 1.7%까지 인하, 수급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늦추기로 함.
 - 또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기로 함.
 -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부와 여당의 안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높고, 공적연금 강화라는 공무원단체 명분도 함께 담겨 있어 비교적 ‘잘 된 합의’라는 평가를 하고 있음.
 - 야당의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덕분에 가능해졌다.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노인빈곤문제 해결의 중요한 출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피력함.
-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 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는 각기 다른 이유로 해당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약 2천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다.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할 사항”이라며 실무기구가 도출해낸 합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
 - 여당의 서청원 최고위원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 “국민에게 큰 재앙을 주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에 관한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합의되지 않았고 이 부분에서 앞으로 당과 원내대책에서 정말 뼈아픈 진행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함.
 -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야가 5월 1일 발표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한 바가 없다”며 “공무원노조는 현재 단일안이라고 국회연금특위에 올라온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반대하며 공적연금 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상향 조정도 시기를 4월 국회가 아니라 8월 국회로 넘기려는 속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오직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포장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전교조 또한 “국민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전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배신하는 여·야의 야합행위”라고 비난하고 “우리는 이 합의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107만 공무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합의는 원천무효”라며 합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힘.

◆ 정부, 공공기관별 노동시장 구조개편 추진하나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발전위원회가 임금피크제 실시와 성과연봉제 확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논란을 벌이다 노사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논의를 끝내자마자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함.
 - 정부는 정년 60세를 보장하되 그 이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실시를 제시한 반면, 노동계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60세부터 임금을 줄이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요구하면서 합의에 실패함.
 -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하고, 7년 미만 근속자나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
 - 기재부는 이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하고, 이 제도 도입을 통해 기존 노동자 임금 절약분을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힘.
- 반면 노동계는 공공기관별 총인건비를 증액하지 않을 경우, 임금피크제를 통해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해도 신규채용 여력은 극도로 제한돼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반박함.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성명서에서 “오늘 제시된 임금피크제 방안을 요약하자면 ‘공공기관별 총인건비를 묶어둔 상태에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정년 연장된 고령자와 신입직원 신규채용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그렇듯하게 청년과 고령자 모두의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정부와 공공기관 사측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모든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함.
 - 이어서 “공공기관 노조는 고령화 사회 대비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오늘 발표한 무리한 내용을 일방 강행한다면 모든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저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힘.

◆ **한국공무원노조연맹과 한국공무원노조 조직통합**

- 지난달 6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공무원노조연맹과 한국공무원노조는 조직통합에 합의하고 실무기구인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 8천 명 규모의 공무원 조직을 결성키로 함.
 - 통합추진위는 통합연맹 규약을 만들고 의무금 납부액수를 정하는 등 실무적인 사항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으며, 두 조직은 한국공무원노조가 한국공무원노조연맹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조직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상태임.
 - 한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한공연과 한공노 모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같은 교육기관 행정직·일반직(기능직)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다”며 “조합원 구성이나 요구사항이 다르지 않은 만큼 힘을 합쳐 한목소리를 내자는 취지에서 통합에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함.
 - 한국공무원노조연맹은 “늦어도 다음 달까지 통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무 조정에 나서고 있다”며 “통합 후 한국노총 내 단일 공무원조직 위상을 확보하고 조직 확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함.

◆ **삼성테크윈, 한화 편입에 노조 전면파업**

- 삼성테크윈은 6월 29일 임시 주총을 열어 상호변경 등 정관 일부를 변경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지난달 18일 공시하면서, 삼성테크윈 노조가 이에 반발해 기존 부분 파업을 총파업으로 확대하기로 함.
 - 삼성과 한화는 지난해 11월 석유화학부문 계열사인 삼성종합화학·삼성토탈, 방위산업부문 계열사인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 등 4개 회사를 1조 9천억 원에 매각·인수하기로 합의함.
 - 삼성토탈과 삼성종합화학은 4월 말 임시 주총을 거쳐 한화그룹에 편입되었고,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도 다음 달 모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삼성테크윈 노사는 지난 달 위로금, 노동조건 등을 두고 협상을 벌이다가 결렬이 되어 부분 파업에 들어간 상태임.
 - 삼성테크윈 노조관계자는 “48개 조건을 19개로 줄여 협상을 요구했는데도 회사 쪽에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오늘부터 파업 수위를 높여 판교, 창원 등의 사업장에서 일손을 놓는 총파업을 시작했다”고 밝힘.

◆ **현대차 계열사, ‘통상임금 협상’ 쟁의조정 만료**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를 비롯한 19개 현대차그룹사 노조가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쟁의조정이 지난 5월 11일 만료됨.
 - 노조들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그룹사에 공동교섭을 요구해 왔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4월 30일 중노위에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함.
 - 1차 조정회의에서 노조들은 “지난해 단체교섭 별도합의를 통해 올해 3월 31일까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시점과 임금체계 개선 방향을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계열사 사업장의 노동시간단축(주간연속 2교대제 8시간+8시간 체계) 문제와 연계돼 있으므로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고 밝힘.
 - 회사 측은 “통상임금 문제는 중노위 조정대상이 아니다”며 “중노위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중노위는 “통상임금 적용 문제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고 단시간에 결정될 문제 역시 아니다”며 “노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교섭을 진행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내놓음.
- 5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로템 등 19개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사의 통상임금 협상과 관련해 “조정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림.
 -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결정을 했을 때 노조가 쟁의행위를 벌일 경우 고용노동부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법 쟁의행위로 간주하고 있음.
 - 반면 교섭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한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노동계는 행정지도 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고 있어 이들 노조의 후속 방안에 귀추가 주목됨.

◆ **청년유니온, 최저임금 인상 운동 시작**

- 청년유니온 조합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사업단은 19일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캠페인 전국투어나 최저임금 당사자 청년 인터뷰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힘.
 - 사업단은 앞서 지난달 16일과 17일 광주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벌였고, 20일 인천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캠페인을 이어 갈 계획임.
 - 청년유니온 조직국장은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한 청년들의 상당수가

포괄임금제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이나 그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곧 청년들의 임금인 현실”이라고 설명함.

- 그는 이어 “사업단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자기 문제로 느끼고 문제의식을 주변으로 확산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함.
- 아르바이트노조는 이날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활동을 위한 ‘만원버스’ 운동을 제안하고, 만원버스는 다음 달 22일 충남 천안시를 출발해 같은 달 29일까지 7박8일간 전국을 돌 계획임.
- 노조 관계자는 “6월 말 최저임금 논의가 논의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인상으로 이어지도록 전국적으로 요구를 모아 내겠다”고 밝힘.

◆ 법원, 산재보험법상 사업 범위는 국내

-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엔지니어링 해외 공사현장에 파견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해외 파견노동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중소건설업체 A사는 2013년 10월 삼성엔지니어링과 이라크 공사현장에 자사 근로자를 파견하기로 계약을 맺고 김씨를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이후 이라크 공사현장에 투입함.
 - 김씨는 이라크 공사현장에서 소음기를 운반하다 허리를 다쳐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김씨가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공단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음.
 - 당시 A사는 공단에 김씨에 대한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음.
 - 김씨는 “근로장소가 단순히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했으므로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해외출장자로서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함.
 - 하지만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은 국외사업 특례를 정하고 있고 해외파견자에 대해서는 공단에 따로 보험가입 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며 “취지에 비춰 보면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함. **KLI**

(정재우, 동향분석팀 연구원)